

제주지방법원 2018. 10. 16 선고 2018가단5682 판결 [소유권이전등기절차이행 청구]

전 문

원고A(개명 전 : B)

피고C

변론 종결무변론

판결 선고2018. 10. 16.

주 문

1.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 중 3분의 1 지분에 관하여 2017. 7. 18. 약정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라.
2.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.

N

청 구 취 지

주문과 같다.

이 유

1. 청구의 표시 :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.
2. 무변론판결(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)

판사이규훈

별지